복 흥 초 등 학 교 학 칙

개정 2006. 4. 7.

개정 2007. 4. 1.

개정 2008. 2. 25.

개정 2009. 2. 19.

개정 2010. 2. 11.

개정 2011. 4. 12.

개정 2012. 4. 05.

전면개정 2014. 4. 08.

개정 2015. 4. 15.

개정 2019. 4. 11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교는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의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교의 명칭은 '복흥초등학교'라 한다.

제3조(위치) 본교의 위치는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정산로 12 에 둔다.

제2장 수업연한 · 학년 · 학기 및 휴업일

제4조(수업연한)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.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제5조(학년·학기)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고,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 업일수·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, 제2학기는 제1학 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6조(휴업일)

-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- 1. 관공서의 공휴일 및 국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
- 2. 여름휴가, 겨울휴가, 학년말휴가, 단기방학
- 3.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 휴업일
- 4.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재량휴업일
- ② 제1항의 각호 외에 비상재해,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이를 조절할 수 있다.

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

제7조(학급편제·학생정원) 학년별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매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장 교과 · 수업일수 및 평가

제8조(교과·수업일수)

- ① 각 학년의 교과는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편성 운영한다.
- ② 수업일수는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학교교육계획에 따른다. 다만,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제의 실시,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
- **제9조(평가)**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, 학교 교육계획에 학생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.

제5장 입학·재입학·편입학·전학·유예·수료 및 졸업

제10조(입학)

- ①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·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해 복흥면장으로부터 취학통지서가 발부된 자와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와 동시행령 제19조에 의해 학교장 이 입학을 허가한 자로 한다.
- ② 입학 시기는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1항에 의해 지정된 날짜로 하되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이를 조절할 수 있으나 학년초부터 30일이내로 한다.
- ③ 1항에 해당되는 학생이 입학기일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할 때와 초·중등교육법시행 령 제18조에 의해 입학을 허가한 자는 거주지 읍면·동장에게 그 성명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(2008.05.27공포)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·면·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전입학)

- ① 학생의 전학은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다.
- ② 제10조 및 제11조 1항에 의해 전입학절차를 마친 학생이 전학기일 후 7일이내에 전입학하지 않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학생의 거주지 읍·면·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재취학·편입학)

- ① 초·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1항과 제29조 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재취학 및 편입학하고자 할 때는 제18조 2항의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학교장이 학년을 정하여 입학시킬 수 있다.
- ② 재취학을 원하는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/3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이 불가능하다.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재취학을 요구할 경우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확인 시킨 후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보호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다.
- ③ 동시행령 제19조 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는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「출입국관리법」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한다. 다만,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
- 1.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2. 임대차계약서,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3.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·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.

제13조(취학의무의 면제 유예 정원외 관리)

- ①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. 다만,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.
-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읍·면 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 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 학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. 이때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실종, 행방불명, 무단가출 등으로 인한 장기 결석자
- 2. 소년원법에 의하여 소년원·감화원·소년보호단체·사원·교회·요양소 등에 보호처 분을 받아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
- 3.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등
- 4. 기타 학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④ 취학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.
- ⑥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.

제14조(수료·졸업)

-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.
-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8조 제2항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- ③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.
- 제15조(학생 출·결석 관리) 학생의 출결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, 안전지도, 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
 - ① 결석 :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.
 - ② 지각 : 등교시간 이후 등교하는 것을 말한다.
 - ③ 조퇴 : 당일의 교육과정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.
 - ④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임에게 연락하고 결석계를 제출한다.
 - 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은 (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, 교육부 훈령 제280
 - 호) 제8조 (출결상황) 별표 8(출결상황 관리)에 의거하여, '질병결석'으로 처리하며, 출 결처리 방법은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한다.
 - ⑥ 독촉, 경고 및 통보
 - 1.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거나 고용자에 의해 의무교육을 방해 당할 시는 초.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독촉 또는 경고를 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,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학생의 거주지 읍·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석의 경우는 출석부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결석일수에 포함 시키지 아니한다.
 - 1. 법정 전염병과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(학교 보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2조)으로 인한 결석
 - 2. 경조사로 인한 결석(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1항의 별표2의 기준)
 - 3.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
 - 4.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"학교를 대표한 경기, 경연대회, 훈련 참가 ,교환학습, 체험학습"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 - 5.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이수 기간
 - 6. 「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」에 근거한 경조사
 - 7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

제16조(체험학습)

①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은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5항과 전라북도교육청「체험학습 추진 지침」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때 현장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.
- 1. 체험학습 개인 교환학습, 단체 교환학습,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.
- 2.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학생의 희망과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 장이 허가한 역사탐방, 국토순례, 환경관련활동, 외국어체험활동, 외국문화와 전통문화 체험활동 등
- ③ 체험학습의 출석인정기간은 다음과 같다.
- 1. 개인 교환학습 1개월(4주) 이내로 운영하되, 연장 가능
- 2.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
- 3. 교외 체험학습 연 10일 이내(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)
- 4. 기타 체험학습 단체 해외 체험학습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체험학습만 가능하며, 학교장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체험학습기간 모두 인정한다.
- ④ 체험학습의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.
- 1. 개인 교환학습은 학교장이 위탁교육 실시 기관장과 상호 협의하여 공문을 통해 위탁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여부를 통보한 뒤 실시한다.
- 2. 단체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한다.
- 3.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.
- 4.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.
- 5. 개인 교환학습, 단체 교환학습, 교외 체험학습의 신청절차는 전라북도교육청「체험학습 추진 지침」에 의거하여 실시한다.

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· 학교교육과정위원회

제17조(조기진급·조기졸업)

- ①초·중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4조, 제5조, 제8조,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(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)에 의하여 조기진급·조기졸업제를 할 수 있다.
- ② 초·중등교육법 제27조 제3항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, 전라 북도교육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한 규정(2013.2.6.)에 의하여 조기진급·조기졸업 이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은 별도의 운영계획에 의한다.

제18조(학교교육과정위원회)

- ①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·운영한다.
- ②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전 직원
- 과 학부모를 필요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한다.
- ③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은 「학교교육과정위원회 규정」에 따른다.

제7장 수업료 · 입학금 · 기타의 비용 징수

제19조(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)

① 초·중등교육법 제2장 의무교육에 의거 수업료와 입학금은 받을 수 없으며,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

제8장 학생포상. 학생징계, 학생생활 규정

제20조(포상)

- ①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, 근면성이 뛰어난 자,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,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에 의해 표창할 수 있다.
- ② 학생 시상의 종류, 대상과 방법,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.

제21조(징계)

- ① 초·중등교육법 제18조 1항에 의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을 징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. 다만, 징계의 경우에는 해당학생 또는 학 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, 징계의 종류는 다 음과 같다.
- 1. 학교 내의 봉사
- 2. 특별교육이수
- 3. 1회 10일 이내.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
- 4. 기타 「학교생활규정」에 의한 징계
- ②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.
- ④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훈육·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, 도구,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 단, 세부내용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로 정한다.

제22조(학교생활규정)

- ① 학생들의 학교 내 교육·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항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 에 관한 규정을 따로 수립하여 운영하여야한다.
- ② 1항의 규정을 수립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, 학부모,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,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.

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

제23조 (전교 다모임회 조직)

-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학생전원으로 구성된 전교 다모임회를 구성 운영한다.
- ② 전교 다모임회는 회장 · 부회장 및 다모임 활동으로 둔다.
- ③ 전교 다모임회 임원선출과 임기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하고 정한다.

제24조(전교 다모임회 운영)

- ① 정기회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갖는다.
- ② 각 다모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한다.
- ③ 전교다모임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활동 내용은 교내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한다.

제10장 보칙

제25조(학칙개정절차)

- ①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생·학부모·교원의 의견을 들어야하며, 전라북도교육청 학칙개정업무 처리요령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-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.
-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,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철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6조(기타 법령의 적용) 이 학칙에서 제외된 사항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(세부규정)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규정으로 정한다.